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국가세무총국의**  **<세무문서 전자송달규정(시범시행)>발표에 관한 공고**  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39호  공산당의 제19기 제4차 전체회의(4중전회) 정신을 심도있게 관철하고 ‘팡관푸(放管服: 시장 가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)’ 개혁 요구를 실현하며 세무집법 방식을 최적화하여 납세자의 세무처리를 보다 더 편리화 하기 위하여, 국가세무총국은 <세무문서 전자송달규정(시범시행)>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하며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.  첨부: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  국가세무총국  2019년 12월 3일  **세무문서 전자송달규정(시범시행)**  **제1조** 납세자의 세무처리를 보다 더 편리하게 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세수징수관리 효율을 제고하고 징수납부 쌍방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, <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> 및 그 실시조례, 국가전자정무 등 관련 제도규정에 근거하여 세무문서 송달업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본 규정을 제정한다.  **제2조** 본 규정에 일컫는 전자송달은 세무기관이 전자세무국 등 특정시스템(이하 ‘특정시스템’)을 통하여 납세자, 원천징수의무자자(이하 ‘수송달인’)에게 전자버전 세무문서를 송달하는 것을 가리킨다.  **제3조** 수송달인의 동의를 거쳐, 세무기관은 전자송달방식으로 세무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.  전자송달과 기타송달방식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. 수송달인은 이에 근거하여 세무사안을 처리하고,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.  **제4조** 수송달인이 전자송달 채택을 동의하는 경우, <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>를 체결한다. <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>는 전자송달의 문서범위, 효력, 채널과 기타 확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.  수송달인은 특정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버전 <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>를 직접 체결하거나 세무기관 세무처리 서비스센터에서 종이 <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>를 체결할 수도 있다. 세무기관은 적시에 관련 시스템에 입력한다.  **제5조** 세무기관이 전자송달방식을 채택하여 세무문서를 송달하는 경우, 전자버전 세무문서가 특정 시스템 수송달인 페이지에 도착한 일자를 송달일자로 하고 특정시스템에서 송달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한다.  **제6조** 세무기관이 수송달인에게 전자버전 세무문서를 송달한 후,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 방식을 통해 알림 메시지를 발송한다. 알림 서비스는 전자문서 송달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.  수송달인은 적시에 특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버전 세무문서를 열람한다.  **제7조** 수송달인이 종이 세무문서가 필요할 경우, 특징시스템을 통해 자체 출력할 수 있고 세무기관 세무처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출력할 수도 있다.  **제8조** 세무처리결정서, 세무행정처벌결정서(간이절차처벌 미포함), 세수보전조치결정서, 세수강제집행결정서, 출국금지결정서 및 세무조사와 세무행정재심사 과정에서 사용한 세무문서 등은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.  **제9조**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 | **国家税务总局**  **关于发布《税务文书电子送达规定（试行）》**  **的公告** 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9号  为深入贯彻党的十九届四中全会精神，落实“放管服”改革要求，优化税务执法方式，进一步便利纳税人办税，国家税务总局制定了《税务文书电子送达规定(试行)》，现予以发布，自2020年4月1日起施行。  特此公告。  附件：税务文书电子送达确认书  国家税务总局  2019年12月3日  **税务文书电子送达规定（试行）**  **第一条** 为进一步便利纳税人办税，保护纳税人合法权益，提高税收征管效率，减轻征纳双方负担，根据《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》及其实施细则、国家电子政务等有关制度规定，结合税务文书送达工作实际，制定本规定。  **第二条** 本规定所称电子送达，是指税务机关通过电子税务局等特定系统（以下简称“特定系统”）向纳税人、扣缴义务人（以下简称“受送达人”）送达电子版式税务文书。  **第三条** 经受送达人同意，税务机关可以采用电子送达方式送达税务文书。  电子送达与其他送达方式具有同等法律效力。受送达人可以据此办理涉税事宜，行使权利、履行义务。  **第四条** 受送达人同意采用电子送达的，签订《税务文书电子送达确认书》。《税务文书电子送达确认书》包括电子送达的文书范围、效力、渠道和其他需要明确的事项。  受送达人可以登录特定系统直接签订电子版《税务文书电子送达确认书》，也可以到税务机关办税服务厅签订纸质版《税务文书电子送达确认书》，由税务机关及时录入相关系统。  **第五条**税务机关采用电子送达方式送达税务文书的，以电子版式税务文书到达特定系统受送达人端的日期为送达日期，特定系统自动记录送达情况。  **第六条** 税务机关向受送达人送达电子版式税务文书后，通过电话、短信等方式发送提醒信息。提醒服务不影响电子文书送达的效力。  受送达人及时登录特定系统查阅电子版式税务文书。  **第七条** 受送达人需要纸质税务文书的，可以通过特定系统自行打印，也可以到税务机关办税服务厅打印。  **第八条** 税务处理决定书、税务行政处罚决定书（不含简易程序处罚）、税收保全措施决定书、税收强制执行决定书、阻止出境决定书以及税务稽查、税务行政复议过程中使用的税务文书等暂不适用本规定。  **第九条** 本规定自2020年4月1日起施行。 |